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의 체력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학교를 말한다.
2. “학교체육시설”이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운동장과 체육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목적

2.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대상 범위
3.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4. 그 밖에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에게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각급 학교의 안정적인 개방 환경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시설 유지보수비 지원
2. 그 밖에 구청장이 학교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학교체육시설 개방 실적에 따라 우선순위를 둘 수 있다.

제6조(협약체결) ① 구청장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협약서에는 학교체육시설의 종류, 개방시간, 이용수칙, 상호협력, 그 밖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은 학교는 사용내역이 기재된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정적 지원에 관한 서류와 장부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검사 결과에 따라 재정적 지원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받은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표창) 구청장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또는 학교에게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시설의 생활체육시설 등으로의 이용)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장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시설 중 체육관, 운동장 등(이하 “학교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생활체육시설 등으로 이용하도록 개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체육시설의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시설의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

학교체육시설의 종류 (제2조제1항 관련)

구분	학교체육시설의 종류
운동 종목별 시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골프연습장 2. 궁도장 3. 게이트볼장 4. 농구장 5. 당구장 6. 라켓볼장 7. 럭비풋볼장 8. 롤러스케이팅장 9. 배구장 10. 배드민턴장 11. 볼링장 12. 빙상장 13. 사격장 14. 세팍타크로장 15. 수영장 16. 스쿼시장 17. 승마장 18. 썰매장 19. 씨름장 20. 아이스하키장 21. 야구장 22. 양궁장 23. 역도장 24. 에어로빅장 25. 요트장 26. 육상장 27. 조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28. 체력단련장 29. 체육도장 30. 체조장 31. 축구장 32. 카누장 33. 탁구장 34. 테니스장 35. 펜싱장 36. 하키장 37. 핸드볼장 38. 인공암벽등반장 39. 그 밖에 교육과정에 필요한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p>그 밖의 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운동장 2. 체육관 3. 샤워장, 탈의실 등 부대시설